

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. 6. 28 선고 2017가단2154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1. A

2. B

3. C

피고D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7. 6. 2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들에게,
가. 경남 함안군 E 대 357㎡ 중 별지 도면 표시 가, 나, 다, 라,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0㎡ 지상 토담조 칼라강판지붕 단층 주택 및 같은 도면 표시 마, 바, 사, 아, 마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5㎡ 지상 토담조 칼라강판지붕 부속건물을 각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고,
나. 2017. 4. 29.부터 위 제1의 가.항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각 월 66,666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의 가.항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7. 4. 29.부터 주문 제1의 가.항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0,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·수익할 수 있으므로(대법원 2011. 7. 14. 선고 2009다76522 판결 등 참조), 공유자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각 월 66,666원($200,000\text{원} \times 1/3$)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다).
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김세종

별지